성주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11년 6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제정이유

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성주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운영(안 제3조)
나. 사회적기업 등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육성계획 수립(안 제4조)
다. 사회적기업 등 육성을 위하여 각종 행·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 (안 제6조 ~ 제8조, 제12조 , 제1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 "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"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의견제출자	제출의견	조치내용	사유
성주군의회 백철현 의원	○제3조제4항제2호 위촉직 위원을 **"성주군 중소기업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기업인"**으로 하던 것을 → **"기업인"** 으로 한다.	**반영**	성주군 중소기업협의회라는 단체로 국한하지 않고 전 기업인으로 확대 지정하여 골고루 혜택을 부여토록 하는 것이 타당함

(1) 입법예고 결과(2011. 3. 17 ~ 2011. 4. 6.) : 의견있음

(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사회적기업”이란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.
2. “예비 사회적기업”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,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.
3. “취약계층”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.
4. “사회서비스”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.
5. “연계기업”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.

제3조(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) ① 성주군수(이하 “군수”이라 한다)는 사회적 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(이하 “사회적기업 등”이라 한다)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회적기업 등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
2. 사회적기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1/3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

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당연직 위원 : 부군수, 기획감사실장, 지역경제과장
2. 위촉직 위원 : 대학교수, 기업인 등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사회적 기업 업무 담당이 한다.

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인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.

⑩ 성주군(이하 " 군" 이라 한다)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「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⑪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4조(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)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성주군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(이하 "육성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 시행한다.

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
2.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
3.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4.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
5. 경상북도와 성주군 간 협력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

③ 군수는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당해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

제5조(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) ① 군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관계 규정에 따라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시설비 등 지원)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·시설비 등을 지원·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.

제7조(경영지원 등)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·법률·기술·세무·노무·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경상북도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. 다만, 군수는 퇴직공무원, 민간전문가 등의 해당분야 전문성 기부를 촉진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한다.

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재정지원)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기업명칭,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2. 사업의 목적 및 세부 사업계획
3.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출내역
4. 지원사업의 범위 및 외부로부터 지원내역 또는 지원계획
5.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
6. 임・직원 구성(유·무급 포함)에 관한 사항
7.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등

④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국가 또는 기관·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사회적기업 등과 사업 위탁협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표준협약서 내용에 준한다.

제9조(목적외 사용 금지)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.

제10조(보고 및 검사 등) ①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「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」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(업무담당 공무원)으로 하여금 장부·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1조(우선구매 등 지원)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하여 구매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2조(조세감면) 군수는 사회적기업 및 연계기업에 대하여 「지방세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13조(민간위탁 또는 대행사업 참여 장려) 군수는 군 사무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(하천쓰레기 수거, 문화재 주변 정비, 도로변 풀베기사업, 행정 사무보조, 청소용역 등)등 단순 노무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 또는 대행 시 사회적기업 등에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.

제14조(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) 군수는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창업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1. 지역 내 민간기업·단체 간 교류·협력 네트워크의 구축·운영 지원
2.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

제15조(홍보 등)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1.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
2.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
3. 전문가 포럼,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